

울 산 지 방 법 원

제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0나5243 차량수리비등
원고, 항소인	** 주식회사 울산 중구 **동 *** 대표이사 남OO
피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** 울산 북구 **동 *** 대표이사 남OO
제 1 심 판 결	울산지방법원 2010. 9. 7. 선고 2010가소10446 판결
변 론 종 결	2011. 3. 24.
판 결 선 고	2011. 4. 7.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피고는 원고에게 7,088,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3. 12.부터 2011. 4. 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
라.
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8,188,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가. 인정사실

1) 배OO는 2006. 7.경 피고와 사이에 울산 **호 트럭(이하 '이 사건 트럭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, 2006. 7. 13. 위 트럭을 피고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운행하여 왔다.

2) 배OO는 2009. 11. 11. 01: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 무주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,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인 윤OO이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울산 **호 택시(이하 '이 사건 택시'이라 한다)의 오른쪽 앞 휨다 부분을 충격하였고, 이로 인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왼쪽으로 밀리면서 왼쪽 앞 휨다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OO 소유의 **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1) 살피건대,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·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(대법원 1991. 8. 23. 선고 91다15409 판결 등 참조)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는 배OO의 사용자로서 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배OO는 2006. 7.경부터 2007. 4. 말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고, 피고는 2007. 7.경 배OO에게 이 사건 트럭을 양도하면서 자동차등록증, 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하였으며, 2008. 4. 15.에는 위 트럭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배OO가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,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, 피고가 배OO에게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,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트럭이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는 여전히 위 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배OO를 지휘·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다카1096 판결,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5다1061 판결 등 참조), 피고의 위 주장은 이

유 없다.

2. 손해배상의 범위

갑 제5,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에게 고용된 윤00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운송수익금(이른바 사납금)은 1일 138,000원인 사실,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를 2009. 11. 11.부터 같은 달 21.까지 11일간 수리하였는데, 위 택시는 위 11일 중 비번인 2일을 제외한 나머지 9일간 운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, 위 택시의 수리비가 5,612,505원인 사실, 원고는 윤00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치료비 234,04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와 같은 일실 운송수익금 1,242,000원(= 138,000원 × 9일), 택시 수리비 5,612,505원, 윤00의 치료비 234,040원의 합계 7,088,545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원고는 윤00에게 지급할 최저임금 1,100,000원(= 100,000원 × 11일)에 대하여도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위 최저임금은 이 사건 사고에 관계없이 원고가 사용자로서 윤00에게 최소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, 앞서와 같이 윤00의 휴무일 11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일실 운송수익금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는 바이므로, 원고 주장의 위 최저임금 1,100,000원을 별도로 원고의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 7,088,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0. 3. 12.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

일인 2011. 4. 7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'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'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,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,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성창익 _____

 판사 하세용 _____

 판사 안지열 _____